제 1 장  <총 칙>

제 1 조

본 회는 숭실대학교 테니스 클럽(SoongSil Univ. Tennis Club)이라 칭한다.

제 2 조

본 회는 숭실대학교 총학생회 내에 둔다.

제 3 조

본 회 회원의 자격은 숭실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지 않은 학생으로 한다.

제 4 조

본 회의 활동과 목적은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며 테니스를 통한 체력 향상 및 인간관계의 원만을 기한다.

이에 다음과 같은 운영 방침을 가한다.

1항 : 테니스 클럽은 회장을 중심으로 각 부 및 선후배간의 지도체제를 확립한다.

2항 : 회장단 및 각 부 부장은 부과된 임무를 최대한 발휘한다.

3항 : 교내 각종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.

4항 : 학생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.

제 5 조

본 회칙은 총 4장 및 부칙, 20개조, 33개항으로 구성된다.

제 2 장  <조직과 임원 및 기능>

제 1 조

본 회의 조직은 지도교수, 명예위원회, 회장단 및 각 부로 나뉜다.

1항 : 지도교수는 본회와 뜻을 같이하는 본 대학 재직중인 교수로서 본 회를 지도, 편달한다.

2항 : 명예위원회는 본 회를 거쳐 졸업한 선배들로 구성한다.

3항 : 회장단에는 회장 및 회장 하에 부회장, 회계, 서기, 각 부 부장을 둔다.

가)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, 본 회 활동을 총괄한다.

나)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권한을 대행하며, 각 부서를 총괄하고 사업계획 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한다.

다) 회계는 회비의 보관과 출납계를 작성, 보고한다.

라) 서기는 문서의 작성 및 보관을 담당한다.

제 2 조

각 부서의 기능

1항 : 지도부 - 모든 훈련 때의 교육, 테니스에 관한 자료수집, 세미나 등과 회원의 실력 향상 및 본 회 자체내의 규율을 담당한다.

2항 : 관리부 - 코트, 동방, 거트, 홈피 관리의 4개 세부분야로 나뉘어 관리한다.

코트관리) 코트 내 모든 자재 등의 관리 담당 및 코트 상태 확인/점검한다.

동방관리) 동방 내 모든 자재 등의 관리 담당 및 동방 상태 확인/점검한다.

거트관리) 거트/그립 등의 테니스 용품의 수요/공급을 관리한다.

홈피관리) 동아리 홈페이지의 개발/유지 및 업데이트를 관리한다.

3항 : 섭외부 - 동아리 대내외 모든 행사에 관한 장소 및 물품 섭외와 타 학교관련 행사에 대하여 담당한다.

4항 : 홍보부 - 동아리 대내외 모든 행사에 관련된 홍보 및 연락을 담당하며, 매학기 신입생 모집을 준비/실시한다.

제 3 조

임원 선출 및 자격

1항 : 회장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.

2항 : 회장의 임기는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
3항 : 회장선거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실시하며,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하며, 부결시는 재선거하여 다득표자로 한다.

4항 : 부회장은 2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로서 임기는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
5항 : 부회장의 선출방법은 회장 선출방법과 동일하다.

6항 : 회계, 서기 및 각 부 부장은 회장이 지명한다.

7항 : 각 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각 부장은 차장을 지명하고 그 아래 둘 수 있다.

제 3 장  <재정 및 총회>

제 1 조

재정

1항 : 본회의 재정 경비는 회비 및 보조금으로 한다.

2항 : 회비는 학기 회비와 특별회비로 나누고, 학기 회비는 매 학기 첫 달 마지막 토요일까지 납부해야 한다.

3항 : 회비납부 제외자가 아닌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돌려 받을 수 없다.

4항 : 회비 및 특별회비는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.

제 2 조

정기 총회

1항 : 사회는 부회장이 맡는다.

2항 : 회계는 정기 결산보고를 한다.

3항 : 회장단의 개선 및 운영계획을 발표한다.

4항 : 정기 총회는 학기당 2번 개최하며, 개강총회와 종강총회로 한다.

5항 : 정기 총회의 공고는 최소한 개최 15일 전에 해야한다.

6항 : 개강총회는 매 학기 개강 전 10일 이내, 종강총회는 매 학기 종강 무렵에 실시한다.

제 3 조

임시 총회와 임원회의

1항 : 임시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또는 회장단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.

2항 : 임원회의는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한다.

3항 : 임원회의는 회장 또는 회장단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할 수 있다.

제 4 장  <상벌관계>

제 1 조

본 회의 회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, 육성 발전에 기여함이 큰 자에게는 매년 1회 이상, 회장이 포상한다.

제 2 조

본 회의 회원이 아래 사항에 해당되었을 시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후 제명장에 의해 자격을 박탈한다.

1항 :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이나,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.

2항 : 회비 연체 기간이 1개월 이상인자.

3항 : 정규레슨 및 동아리 행사에 사전 통보없이 매월 2회 이상 결석한 자.

제 3 조

회비 미납시는 써클의 모든 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.

제 5 장  <회계 감사 제도>

제 1 조

회계 감사 제도는 매학기 2회 실시한다.

제 2 조

회계 감사 제도는 다음 시기에 실시한다.

-1학기 : 5월경 동아리 MT이후 10일 이내, 홈커밍데이 이후 10일 이내

-2학기 : 9월경 회장배 이후 10일 이내, 10월경 숭실 OPEN 대회 후 10일 이내

제 3 조

회계 감사 제도는 현 학기 회장/회계 및 회장/회계 경력이 있는자 2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.

부칙

제 1 조

이 회칙의 개정은 임원 회의에서 개정,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.

제 2 조

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회장단이 정한다.

제 3 조

기타 활동상 모임은 회장 및 임원 과반수 이상 또는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언제라도 소집 할 수 있다.

제 4 조

본 회에 등록하는 신입회원은 교내의 타 동아리에 이중 등록이 불가능하며, 첫 2학기동안 부회원으로 정한다.

제 5 조

회비 납부 제외자 - 회장, 휴학생 및 6학기 이상 등록필한자.

제 6 조

본 회칙은 1984년 3월 3일 시행된 내용을 개정한 것이며, 199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